대구 연경 금성백조 예미지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2018.03.2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8.04.27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및 [별표3]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정에 의거 수도권외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지역으로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날로부터 1년동안 전매가 금지되며, 85㎡이하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청약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추첨제』가 적용됩니다.
- ■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40%만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 ·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yeongyeong-yemizi.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17. 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2015.12.29)이 적용되오니,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순위제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 : 기존 '1,2,3순위' → 변경 '1,2순위'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 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 → 변경 '무주택세대구성원'(1세대에 1명만 신청가능)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적용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변경(가입 또는 변경 후 2년) 및 상향 변경 시 청약제한(규모변경 후 3개월) 기간 폐지
    → 즉시 변경 및 청약가능/기납입한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청약 허용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 '60㎡이하 및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 변경 '60㎡이하 및 수도권 1억3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
-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 당 사업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는 물론 이와 인접한 경상북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34호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이상 (2017.10.27. 이전)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 거래 및 분양권 거래, 알선, 불법전매에 관한 규제(주택법 제64조, 제65조)에 의거하여 위반자에게는 주택공급계약 취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청약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청약접수 기간 중 은행 서버의 과부하 등으로 인한 공인인증서 발급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은행(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입주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합니다.
  (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 · 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 고령자와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60일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으로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2018.02.09.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20585호(2018.04.2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공고일 2018.04.27.대구신문)
-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일원(대구연경지구 C-3BL)
- ■ 대지면적 : 46,929.00㎡
- ■ 공급규모 : 지하 1층, 지상 18층 아파트 12개동, 총 71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주차대수 총995대 (아파트 : 986대, 근린생활시설 : 9대)
  [특별공급분 182세대 일반특별공급 10%(4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0%(70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0%(46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3%(20세대)]

■ 공급대상 (단위 : ㎡)

구분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주택형(㎡)	세대별주택면적(㎡)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최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특별공급					일반공급	합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소계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민영주택	2018000613-01	78.9905	78.9905	23.1418	102.1323	41.0350	143.1673	57.5905	33	10	10	10	3	74	107	6
	2018000613-02	84.9921	84.9921	23.3690	108.3611	44.1528	152.5139	61.9662	118	36	36	36	10	245	363	22
	2018000613-03	101.9922	101.9922	27.4937	129.4859	52.9842	182.4701	74.3607	31	0	24	0	7	210	241	1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구분	형별(세대수)	해당동	층별	세대수	공급가격			공급대금 납부방법							
					대지비	건축비	소계	계약금(계약시)	1차 중도금(2018.08.20)	2차 중도금(2018.11.20)	3차 중도금(2019.02.20)	4차 중도금(2019.05.20)	5차 중도금(2019.08.20)	6차 중도금(2019.12.20)	잔금(입주시)
민영주택	78(107세대)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1층	6	88,409,433	193,869,567	282,279,000	28,227,900	28,227,900	28,227,900	28,227,900	28,227,900	28,227,900	28,227,900	84,683,700
			2층	6	88,409,433	203,074,567	291,484,000	29,148,400	29,148,400	29,148,400	29,148,400	29,148,400	29,148,400	29,148,400	87,445,200
			3~4층	12	88,409,433	209,210,567	297,620,000	29,762,000	29,762,000	29,762,000	29,762,000	29,762,000	29,762,000	29,762,000	89,286,000
			5~9층	30	88,409,433	215,347,567	303,757,000	30,375,700	30,375,700	30,375,700	30,375,700	30,375,700	30,375,700	30,375,700	91,127,100
			10층이상	53	88,409,433	218,415,567	306,825,000	30,682,500	30,682,500	30,682,500	30,682,500	30,682,500	30,682,500	30,682,500	92,047,500
	84(363세대)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1층	22	95,126,672	210,486,328	305,613,000	30,561,300	30,561,300	30,561,300	30,561,300	30,561,300	30,561,300	30,561,300	91,683,900
			2층	22	95,126,672	220,452,328	315,579,000	31,557,900	31,557,900	31,557,900	31,557,900	31,557,900	31,557,900	31,557,900	94,673,700
			3~4층	44	95,126,672	227,095,328	322,222,000	32,222,200	32,222,200	32,222,200	32,222,200	32,222,200	32,222,200	32,222,200	96,666,600
			5~9층	110	95,126,672	233,739,328	328,866,000	32,886,600	32,886,600	32,886,600	32,886,600	32,886,600	32,886,600	32,886,600	98,659,800
			10층이상	165	95,126,672	237,061,328	332,188,000	33,218,800	33,218,800	33,218,800	33,218,800	33,218,800	33,218,800	33,218,800	99,656,400
	101(241세대)	101동 102동 103동 110동 111동 112동	1층	17	114,153,887	251,054,113	365,208,000	36,520,800	36,520,800	36,520,800	36,520,800	36,520,800	36,520,800	36,520,800	109,562,400
			2층	18	114,153,887	262,963,113	377,117,000	37,711,700	37,711,700	37,711,700	37,711,700	37,711,700	37,711,700	37,711,700	113,135,100
			3~4층	36	114,153,887	270,902,113	385,056,000	38,505,600	38,505,600	38,505,600	38,505,600	38,505,600	38,505,600	38,505,600	115,516,800
			5~9층	88	114,153,887	278,842,113	392,996,000	39,299,600	39,299,600	39,299,600	39,299,600	39,299,600	39,299,600	39,299,600	117,898,800
			10층이상	82	114,153,887	282,811,113	396,965,000	39,696,500	39,696,500	39,696,500	39,696,500	39,696,500	39,696,500	39,696,500	119,089,500

※ 전용 85㎡초과 주택형에는 건축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혼동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라며, 주택 규모 표시기준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시하오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환산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선납할인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 (선납할인율은 공급계약서 참조 요망) ※ 중도금 이자후불제(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예정자에 대한 융자안내 및 공급계약서 참고)

■ 공통사항

1.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형별 총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층별, 향별, 개방감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된 금액임. 2.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외부새시비용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3. 상기 세대별 공급가격 및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등이 포함되었으며, 소유권이전비용, 취득세, 등록세 등은 포함되지 않음.
4. 주거공용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한 복도, 현관, 계단 등의 공동주택내 지상층 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지하층 및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경비실 등의 면적임.
5. 이 주택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며, 계단식으로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함.
6.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은 변동 없음.
7.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음.
8. 분양중도금은 당사와 업무 협의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함.
9.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10.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11. 중도금 납부 및 납부방법은 당사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계약자가 공급계약서를 확인하여 지정된 날짜에 납입하여야함.
12.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되지 아니함).
13.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발코니 확장금액 안내 (단위 : 원, VAT포함)

신청 형별	확장부분	세대당 확장금액 (부가세포함)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78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함.	11,623,000	1,162,300	10,460,700
84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함.	11,804,000	1,180,400	10,623,600
101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함.	13,643,000	1,364,300	12,278,700

■ 발코니확장공사비 납부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은행	317-0014-0008-11	주택도시보증공사 피에프금융1센터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별도품목(발코니확장)계약서에 준함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동주택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은 신청 형별 확장 부분 외에 개별 실별 ·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광고 및 안내서 등의 그림보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수 있고, 외기에 면해있는 곳은 상대적인 온도차를 느낄수 있음.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플러스 옵션 안내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가능)

1. 시스템 에어컨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VAT포함)

신청 형별	구분	설치위치	판매가	제조사
78	선택1	거실+안방	3,200,000	LG전자
	선택2	거실+안방+침실1+침실2	5,600,000	
84	선택1	거실+안방	3,300,000	
	선택2	거실+안방+침실1+침실2	5,700,000	
	선택3	거실+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6,700,000	
101	선택1	거실+안방	3,400,000	
	선택2	거실+안방+침실1+침실2	5,800,000	
	선택3	거실+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6,800,000	

2. 빌트인 가전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VAT포함)

신청 형별	품목	판매가	제조사
전주택형	인덕션 3구 레인지	550,000	SK매직

3. 가구옵션 (부가세 포함) (단위 : 원,VAT포함)

신청형별	가구	구분	설치위치	판매가
78	붙박이장	선택1 자녀방 드레스룸	침실1,2	2,500,000
		선택2 통합형 붙박이장		2,200,000
	주방 펜트리	선택1	주방	2,750,000
84	붙박이장	선택1 분리형 붙박이장	침실1,2	2,200,000
		선택2 통합형 붙박이장		2,200,000
	주방 펜트리	선택1	주방	2,310,000
101	붙박이장	선택1 자녀방 드레스룸	침실1,2	2,750,000
		선택2 통합형 붙박이장		2,200,000
	주방 펜트리	선택1	주방	3,300,000
전주택형	현관 중문	선택1	현관	1,100,000

■ 플러스옵션 납부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은행	317-0014-0009-51	주택도시보증공사 피에프금융1센터

- 플러스옵션 계약서에 납부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 및 발코니확장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플러스 옵션은 공동주택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플러스 옵션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품목은 아파트에 실제 시공되는 제품과 제조사 및 모델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에 별도로 설치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 계약이 불가함.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 옵션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방문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Ⅱ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공급별 공급세대수

구분	78	84	101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0	36	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0	36	24
신혼부부 특별공급	10	36	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10	7
합 계	33	118	31

■ 특별공급 공통사항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으로서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단, 이주대책 대상자인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함.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계약체결 불가,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주택 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본 주택은 대구광역시 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지정 고시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음 또한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당첨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당사는 특별공급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함.(일반공급 당첨자 발표일에 특별공급 동,호수 배정 결과 발표)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추첨함.
-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내 무주택세대 구성원중 1인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된 경우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된 것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로 하고, 특별 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구비서류 미비시 접수 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입주자저축(청약자격 요건)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및 제28호), 제3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 를 제외함.
  - 일반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
    ① 청약예금 :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고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청약예치 기준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 일에 납입한 납입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총 납입금액이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 면적별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치 기준금액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 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총 납입금액이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 면적별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치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5.02.27)으로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함.

■ 일반특별공급(기관추천)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의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관련법에 의한 장기복무 군인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함

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 18민주유공자 또는 그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유족, 장애인(장애인등록증 교부된자), 이주대책자	청약통장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납북피해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장기복무군인, 공무원, 우수기능인/우수선수,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박사학위 취득 영구 귀국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분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 (추천서)를 발급 받은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 · 호수 배정) 및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대상기준 및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기관 추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됨
- 공급세대 : 전용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이내로 특별공급함

■ 다자녀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만 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두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자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73호(2016.12.13.)〉 참고하시기 바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 신청자와 타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공급세대 :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이내로 특별공급함
-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당첨자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함.(단, 배점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의 중복신청은 불가함(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에는 잔여세대를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일반공급: 특별공급을 제외한 순위내 청약자에게 공급하는 세대)
- 다자녀 우선순위 배점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7호를 준용함, 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배점표 (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해당사항	비 고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출생자 및 태아를 포함)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출생자 및 태아)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5		
		무주택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 · 도 거주 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 의 사 항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 (특별공급 중복신청 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해당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638호 (2015.12.29.)〉 참고하시기 바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추후 입주지정기한 내 출산관련 자료(출산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유산 · 낙태시 관련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계약취소.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가구원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120%)
3인 이하	5,002,590원 이하	6,003,108원 이하
4인	5,846,903원 이하	7,016,284원 이하
5인 이상	5,846,903원 이하	7,016,284원 이하

※ '17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통계청 자료)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통계자료를 작성, 발표하지 않는 관계로 "6인이상 가구"도 5인이상 월평균소득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람.
1.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 (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 수를 포함) 2.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 직계존비속)의 소득합산이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만19세 이상 직계존비속의 소득도 합산.
3.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4.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5.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6.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 7.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8.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 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9.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10.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소득입증서류 및 기타유의사항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638호, 2015.12.29.〉을 참조하시기 바람

- 신혼부부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 국민연금공단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 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영계획 별지서식 2)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소득증명서류	• 접수장소

- 입주자 선정방법
  ①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 ①의 출산은 재혼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③ ①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이상 계속 거주자, 대구지역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 순)
  2. 미성년인 자녀 수(태아를 포함한다.)가 많은 자 3. 미성년인 자녀 수(태아를 포함한다.)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④ ③의 자녀수를 산정할 때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를 인정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시 우선순위 선정방법을 모든 주택 청약가능지역 거주자가 해당 주택 청약가능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 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입주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 할 수도 있음)
- 공급세대 : 전용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이내로 특별공급함

■ 노부모 부양자 주택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되며, 신청시 그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공급세대 : 주택 건설량의 3% 범위 이내로 특별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의 가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따름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산정 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견본주택 비치)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73호(2016.12.13.)〉 참고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① 특별공급신청서,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본인	• 견본주택 비치양식 사용 • 필요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		②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포함하여 발급요망
	○		③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④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 확인 가능한 신분증
	○		⑤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요망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표등본 만으로 입증이 안될 경우 제출
		○	⑥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⑥,⑦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⑦ 제출
		○	⑦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⑧ 청약통장가입(순위)확인서	본인	• 금융결제원 청약홈페이지 및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 철거민,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장애인 제외(그 외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출)
		○	⑨ 제3자 대리인 서류	본인 / 대리인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대리 신청자의 도장
일반 특별공급	○		①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 장애인의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지자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만 인정함(복지카드 등 기타 서류 불가) •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③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④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⑤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신청한 자에 한함
		○	⑥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⑦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⑧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 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접수장소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②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③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⑤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 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접수장소에 비치
	○		⑦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접수장소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⑧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⑨ 소득증빙 구비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③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신청한 자에 한함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①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②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③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④ 주민등록증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⑤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날인 필요.

▣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 ~ 17:30)
[인터넷 청약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

구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1)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신청하신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자 2)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신청하신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자	
이용방법 및 절차	- 홈페이지 (www.kbstar.com) 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스마트폰: KB스타뱅킹앱 청약 가능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에 접속 → APT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 취약자등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에서 청약가능(창구접수시간 : 09:00~16:00)

-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 신청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 주민등록등본 1부,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3자 대리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속,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가 추가로 구비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서 위임용) →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은 본국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신청접수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본인확인증표(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 · 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 서류 제출해야 함)
※ 신청자 착오로 인해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당사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주택공급신청서상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신청내역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해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무주택기간,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전 확인하고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일반공급 공통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당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는 물론 이와 인접한 경상북도 거주자까지 확대해서 공급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대구광역시 고시」제2017-134호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음.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시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주택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소명기간 내에 해당 일반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함.
- 1순위 청약 해당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하되,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니므로, 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자 또는 기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도 본 주택청약 가능함.
- 당첨 및 계약체결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

■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순위		주택형		신 청 자 격
민영주택	1순위	일반공급	전용85㎡이하	가점제(40%) / 추첨제(6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전용85㎡초과	추첨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주택형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분 / 추첨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방법

- 특별공급 : 지정된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 일반공급
  -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접수 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전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접수 없음)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5항 및 「대구광역시 고시」제2017-134호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한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됨.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의한 높은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전환되어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 검증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면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 접수한 영업점에서 정정 신청을 하여야함.
- 청약자격 관련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자격에 대한 확인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 계약체결 취소 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 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사항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청약관련예금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기준)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관련 예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가능함.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예치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 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가점제 우선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8조에 의거)

-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1,2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구 분	전용면적 85㎡이하	전용면적 85㎡초과
가점제	40%	-
추첨제	60%	100%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17점) 등 총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여야 함
- 2017. 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1. 가점제 적용기준
  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인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가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가입기간에 대한 점수는 신청시 자동 부여)
  2. 가점제 적용 세부기준
  가. 일반기준: 가점제 점수는 나목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로 산정한다.
  나. 가점 산정기준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서류
① 무주택 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 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은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 자동계산)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비고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입니다.
2.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3.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동일한 청약통장계좌로 다른주택에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만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 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에도 청약가능하나,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일반특별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중복청약이 불가하며, 중복당첨시 모두 계약체결불가하며,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효력 상실 및 재사용불가함.
- 청약시 신청한 내용과 민영주택공급신청서(영수증)(창구청약시 : 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 인자란 인지된 내용)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신청자가 일반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의 당첨자(계약미체결자 포함)는 향후 신청주택에 따라 일정기간 청약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을 하는 경우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서명)은 신청자의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반드시 접수창구에서 은행 직원의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 세대 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시하였으니 주택공급신청서상의 「주택형」란을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임의로 철거 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하도록 함.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된 자에 대한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등 전산검색 결과 및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2조에 의한 소명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내에 아래 입증서류(각 호중 택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주택소유 등 부적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함.
  ㉠ 건물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기준), ㉡ 미등기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등본(처리일 기준), ㉢ 무허가건물확인서,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당첨자는 상기 계약체결 기간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미계약시는 별도 통지 없이 계약포기로 처리하며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별도 통보함. • 마감재내역 및 개별선택품목은 신청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람.

Ⅲ 공급일정 및 장소

■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2018.05.02(수) 10:00~14:00	견본주택 방문접수	견본주택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03-4
일반공급	1순위	2018.05.03(목) 08:00~17:30	청약통장 가입자 인터넷 청약 신청	국민은행 가입자 : www.kbstar.com 국민은행외가입자: www.apt2you.com
	2순위	2018.05.04(금) 08:00~17:30		

■ 신청접수 방법

-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특별공급 : 해당 청약기간에 견본주택에서 주택형별로 접수함.
- 층별, 동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 신청일자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40%에 초과된 주택형은 차순위 접수를 받지 않고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 당첨자발표 및 계약일정

구분	당첨자발표	당첨자 및 동 · 호수발표	계약일정
특별공급	일시 : 2018.05.02.(수) 17:00 이후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 게재 ※ 특별공급 청약신청 과열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일시 : 2018.05.11(금) 확인 : 아파트투유홈페이지(개별조회) (www.apt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대구연경 금성백조예미지 홈페이지 (https://www.yeongyeng-yemizi.com)	일시 : 2018.05.23(수) ~ 2018.05.25.(금) (3일간, 10:00~16:00) 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03-4 당사 견본주택
일반공급	일시 : 2018.05.11(금) 장소 : 당사 홈페이지 게재(예비 입주자 포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 · 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 · 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 분	안 내
특별공급	•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 · 호 배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산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구분 / 85㎡이하 / 85㎡초과 : 가점제 40% / 0%, 추첨제 60% / 100%)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고시」제2017-134호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한 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도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해당, 85㎡ 초과 주택의 경우 전원 추첨제 적용)

■ 인터넷,ARS 당첨 발표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 서비스이므로 반드시 당첨자발표 장소 등에서 당첨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舊주택은행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기간		2018.05.11 ~ 2018.05.20(10일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 당첨자사실조회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부동산 ⇒ 청약 ⇒ 당첨확인
	전화 ARS	-	☎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1369)서비스는 2017.0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예비입주자 선정 및 잔여세대 계약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선정된자는 2018.05.25(금)까지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를 당사에 통보하여야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 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이후 발생할 미계약세대 및 계약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예정임.(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재사용이 불가하며, 향후 재당첨 제한등이 적용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동 사유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는 동 · 호수 배정 추첨전에 계약할 주택을 선택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를 배정받은 경우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를 배정받은 주택의 당첨자로 인정되며, 기 당첨된 주택의 당첨사실은 무효처리함)

Ⅳ 계약 안내 및 유의 사항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등 납부

대상	계약체결기간	계약체결 장소	비 고
정당 당첨자	2018.05.23(수) ~ 2018.05.25(금) 3일간,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	청약 및 계약시 구비서류 지참.

- 견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03-4 - 문의전화 : 1899-3935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여 적격자로 확인된 후에 계약을 체결하며, 서류를 제출치 못할 경우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당첨자는 계약체결 방문시 반드시 과거 당첨사실(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등)을 조회 · 확인 후 청약내용을 비교 ·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다만, 신청시에 배우자가 누락되었거나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는 계약 후 추가로 과거당첨사실 및 재산검색을 실시하여 소명토록 함.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되며, 계약금은 별도 이자 없이 환불됨.
-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순서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회차별 납부), 잔금 순으로 납부하여야 함
  - 계약금 납부방법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계약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납부방법 : 계약서 및 입주자모집공고 공급금액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등을 별도 통보하지 않음.(선납할인을 원할시 당사에 별도 문의)
  - 분양대금 납부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은행	317-0014-0010-71	주택도시보증공사 피에프금융1센터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회차별 순서대로 납부하여야 하며,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보호 대상에 제외됨.
- 무통장입금시 동호수(예: 101동101호→1-101)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함.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없음.

■ 계약시 구비 사항

-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구 비 서 류
공통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 내역 모두 포함하여 발급)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 대리계약 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인감도장(대리인),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도장
특별 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
			○	•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신혼부부	○		• 혼인관계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일반공급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
			○	• 주민등록초본(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입주자저축에 6개월이상 가입하고 그 기간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부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가점 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를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사업주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및 일반 1~2순위 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사업주체에게 주장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등의 요구를 사업주체에게 주장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입주예정일 : 2020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예정일은 추후 통보)**
단,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Ⅴ 분양 보증

■ 주택보증 약관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06712018-101-0000400호	일금 일천칠백일십육억사천팔백오십일만이천칠백원정 ₩ 171,648,512,7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채권자가 보증회사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Ⅵ 설계 시공에 대한 유의사항

■ 일반사항

- 주민운동시설 등을 체육시설업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 할 수 없음.
- 사용검사 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경로당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하며 등록 신청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등록 신청 하여야 함.
-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및 장소는 수집운반차량 통행이 용이한 곳에 설치함에 있어 설치장소 인근 세대의 악취등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위치를 확인 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철거 및 이전설치를 요청할 수 없음.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단지 내 각 동별 일부 라인은 일조 및 채광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 같은 사항을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구비하여야 함.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 등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 및 민원,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없음. • 본 사업지의 기반시설은 입주시기에 맞추어 건설 중이나 일부시설은 현장여건에 따라 입주시기 까지 완료되지 못할 수 있음.
- 당 사의 시공범위가 아닌 단지 외부의 근린공원 및 공공공지, 어린이공원, 하천, 보행자도로, 완충녹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각종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인근에 향후 신축되는 건물로 인해 소음 및 먼지가 발생할 수 있고 건물 준공 후 소음 및 상호간의 프라이버시 침해, 일조권, 조망권, 기타 생활환경의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 • 계약 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향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서 세대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는 굴토 후 지내력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시설,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음. • 단지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음. • 본 아파트 주변의 시설 등으로 인하여 야간조명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이 비선호하는 용도의 건물이 건립될 수 있음. • 아파트 세대내부 붙박이장 등(신발장, 주방장, 붙박이장 등)과 접해져 있는 벽, 바닥, 천정 등의 최종 마감자재(지정마루판, 벽지 등)는 설치되지 않음. • 주택건설사업승인 부지 및 기반시설 부지는 지적 공부상 면적으로서 향후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및 경계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분양금액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단지 지적변경 등으로 설계 변경을 요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설계변경에 이의 없이 동의함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 당 아파트와 관련된 분양 홍보물상 조감도 및 견본주택의 모형등의 아파트 입면은 실시공시 특화계획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시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함.
- 동일 형별(평형) 아파트라도 동과 라인에 따라 조망되는 전경이 다르므로 계약 시 해당세대의 전망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관련으로 개인 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정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사업승인 도면 기준으로 모집공고의 분양가를 책정하였으며, 전용면적 증감이 있더라도 분양금액 정산(변경)은 없습니다. 또한 사전 입주자 모집공고의 분양가액은 면적 증감으로 인한 분양가의 상승 또는 감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추후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아파트의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환산방법 : 형별공급면적(㎡)×0.3025 또는 형별공급면적(㎡)÷ 3.3058]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올림, 버림 방식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및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시행자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
- 계약세대가 속한 동 및 향 등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소 침해 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등으로 인한 민원제기 및 보상요구를 일체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대구광역시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자로서,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 변경을 이행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함.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적합한 세대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임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세대내 · 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의 최종사업승인도면과 준공 후 준공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개인 또는 임의 단체가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시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주일이 다소 앞 당겨지더라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본질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자(대납) 지원 기간축소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시설(피트니스센터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 부대복리시설 내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등) 등으로 변경될 예정임.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입주지정기간(공사도중) 전 세대내 무단 출입 및 세대내부의 임의적인 촬영을 금지하며, 무단 촬영물의 유포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피해 발생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짐.
- 입주지정기간은 사업주체에서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정하는 사항으로 입주자 및 입주자가 결성한 임의단체 등이 입주 기간 연장 등을 요구 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견본주택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이 공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름.

■ 택지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 학교배치 관련 초등학교 : 성북초에 배치 가능, 중학교 : 6학교군에 분산배치 가능, 고등학교 :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1학군)내 분산배치 가능
- 연경지구 C-3블럭은 현재 성북초 통학구역이며, 향후 교육부의 연경지구내 신설학교 설립 승인시 가칭'연경지구2초'에 배치 예정임.
- 연경공공주택지구 내에 초 · 중 · 고 학교부지가 설정되어 있으나, 반드시 학교가 설립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설립 여부는 향후 연경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 등에 따른 학생유입 추이에 따라 검토 예정이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됨.
- 사업지 인근 대구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4차 외곽순환도로 계획으로 소음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주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부여건

▶공통사항

-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안내서 등)의 컴퓨터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견본주택 내 전시물(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세대등 이미지 컷)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공급 완료 후 회사 사정에 따라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존 후 폐쇄 또는 철거될 수 있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지구 내 시설물의 변경,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도로소음 등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실 대지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계획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목적물의 견본주택, 단지 배치, 단지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수경, 식재, 포장 등), 호수별 위치, 단지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입면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의 사업계획승인변경 및 경미한 변경사항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 측벽 및 옥탑사인물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APT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등 준공 시 확정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여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감자재 시공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장하였으며, 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가구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 시공 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난간 및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대지경계 및 면적이 최종 확정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며,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견본 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부대복리시설 등)은 착공신고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한 이의는 제기 할 수 없음.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등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 할 수도 있음.
- 입주자 편의성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분양계약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변경을 추진 할 수도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대구연경지구 여건 및 단지 외부 여건

- 대구연경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99호, 2017. 12. 07)로 승인된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이에 따른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 및 향후 계획된 도로의 설치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 사업주체 등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 입주 후 인근 공동주택 단지, 일반상업시설, 교육연구시설(초, 고교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구내 대중교통 (시내버스 등) 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 관계가 없으며, 노선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기 바람. • 지정일(입주자사전검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지구 북측에 인접하여 고압전류선이 서에서 동으로 지나가고 있으며 미확인에 의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변환경

- 공동주택 단지 주변 북측 23M, 동측 20M, 남측 15M, 서측 20M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보행가능한 보도가 설치될 예정임.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로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 단지 서측 경관녹지, 남측 완충녹지가 설치될 예정이며, 녹지내 조경계획은 향후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사와 무관함.
- 공동주택 단지 남측의 일반상업시설 및 서측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은 향후 입주후에도 상업시설지역의 건축물 시공으로 인한 소음, 진동, 빛 공해, 프라이버시 및 조망권 침해 등 생활환경의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으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악취 등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주변여건을 예상하여 표현한 것으로 조감도, 배치도, 모형 등의 주변 사항과 다를 수 있음.

▶단지내부

1) 공통사항

- 단지 외각의 담장 및 돌쌓기 등의 위치 및 형태는 인 · 허가과정 또는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확장 시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단지 내 시설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소음 및 불빛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어) 및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각 단지별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어짐.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 · 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 통합, 사용자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인 · 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에 따라 대지 경계선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A,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단지설계상 이사차량(고가사다리차량)의 사용이 불가하여 각 동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함.
- 본 아파트의 시공과정상 구조 및 성능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외부에서 내부로 연계되는 도로(주도로, 진입도로, 보행자도로, 연결계단등 포함)는 향후 인 · 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실별 벽체부위에 단차 및 마감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보일러 및 각종 설비기구와 관련된 배관이 노출시공 되며, 이에 천정마감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환기시스템(장비)의 위치변경 및 이에 따른 입면, 창호, 전등, 환기구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경사는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따라 본 시공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 품질관리를 위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전기,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외벽 및 세대간 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재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

2) 단지출입구

- 주출입구는 단지 남측에 설치되며, 부출입구는 단지 북측에 설치될 예정이고, 근린생활시설과 겸용으로 사용예정입니다.
- 주출입구 인근에는 학원차량 등을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 및 맘스스테이션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인해 인접세대에 차량소음, 빛공해, 매연,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3) 조경

- 조경공사, 건물외벽 마감공사 등을 포함한 단지 공사는 착공신고도서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하며, 팜플렛 등 각동 홍보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양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타 아파트 단지나 아파트 시공현장등과 비교하여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부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기안전매트 사이즈 또는 설치되어야할 위치에 따라 조경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4)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배기구,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실 시공시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인허가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 1개층 계획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진출입은 단지 남측 데크하부와 단지 북측 부출입구를 통해 진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 각 동의 지하층 출입구는 주동의 위치적 특성상 디자인, 동선, 통로길이, 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동선/기능/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발전기실/ 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등 각종 설비시설 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주동의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5동 1,2호 라인 / 108동 2,3호라인) • 지하주차장의 층고는 마감, 설비종류, 진입차량 등에 따라 상이하며, 실 시공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주동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 자동차 불빛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주민공동시설 등)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공용장소인 휴게공간, 필로티, 놀이터, 관리실, 노인정 등의 설치로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구 및 세대창호가 인접할 수 있음 • 공용주택 및 기타 건축물 외관, 단지명칭, 동호수번호,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입주 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주시 변경된 것에 대하여 입주민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필로티세대 (110동 3호라인) 및 외부와 접하는 측면세대는 단열재가 시공이 되나, 타 세대 대비 냉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옥탑층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및 기타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해 소음, 진동, 빛공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엘리베이터홀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전층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
- 각 호별 공용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의 형태, 면적, 채광 및 환기 등은 세대 조합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부대복리시설

- 각종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의 형태 및 내부구조, 가구집기류는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운동시설물등 일체의 시설물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당사에서는 그 실별 공간만을 제공됨.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경우 이의 없이 동의함.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단지 내 일정 지분을 공유하고 있음.
- 주민공동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및 방재센터는 106동 전면 지하1층에 설치되며,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탁의실, 샤워실 등)은 107동 전면 지하1층에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세대에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은 단지중앙부 (105동과 108동 사이)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경로당과 에듀센터(독서실, 작은도서관 등)은 103동과 104동 사이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맘스스테이션 및 무인택배함은 단지 남측 주출입구 인근에 설치될 예정임.

7) 단위세대

- 전타입 발코니에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층마다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된 사항으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실시공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비확장 발코니에는 본시공시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도면, 모델하우스와 달리 발코니 길이 및 폭이 달라질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상부 세대 비확장의 경우, 하부 세대의 천장 부위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천장형 에어컨위치(옵션선택시), 우물천장 깊이, 커텐박스 깊이, 등박스 위치, 크기 및 깊이 등이 변경되고, 천장고 일부가 낮아질 수 있음.
- 실외기는 실외기실의 여건상 계약자가 희망하는 에어컨의 실외기실의 폭, 높이 및 전기사양 등의 차이로 인해 설치 불가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도면에서 이를 확인하고 에어컨 전문업체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 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되었으며, 기본형(비확장형) 선택시 견본주택과 상이하며 단열재마감, 실 사용공간의 협소함 등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상의 기본형 평면을 참고하시기 바람. • 안방 발코니 및 다용도실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 강마루의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디딤석 및 주방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함. • 안방 발코니 천정에 설치되는 전동빨래 건조대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한 실외기실 문개폐시 일부 간섭될 수 있음.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인 · 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인허가 도면의 발코니, 욕실 등에 표현되는 타일의 크기와 무관하며,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제작하되, 향후 시공시기의 생산여건,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자재로 변경될 수 있음. • 타일줄눈 위치 및 나누기 등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견본주택 및 홍보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이동식 가구 및 페이브릭, 가전, 악세서리 등 집기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음.
- 현관 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기본형 세대 선택시 가구배치 및 장량, 마감, 창호 등이 확장 세대와 상이할 수 있으며,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별 창호 크기, 형태, 손잡이 등이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창호의 개소 및 위치, 발코니 난간의 높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천연자재 및 타일, 엔지니어드스톤의 경우 본공사시 자재의 특성상 패턴 및 색상이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월패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바닥드레인, 선홈통, 수전류, 하향식피난구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 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음.
- 마감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발코니 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주택형(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마감자재 위치와 설치 방향, 창호, 문, 가구 등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의 폭, 높이 차이로 인하여 견본주택처럼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각 세대의 주방가구, 신발장, 화장실 천정내부 및 일반가구 뒷면, 천정면은 골조공사 후 타일 및 도배, 몰딩 등 마감공사가 시공되지 않으며, 아래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지정마루판 및 장판, 타일등의 마감공사가 없어 방바닥 미장면이 노출되며, 추가로 마감공사 시공을 요구할 수 없음. •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발코니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가스계량기환기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다용도실 상부에 전열교환 환기장치 및 급, 배기 덕트가 시공됩니다. 세대 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좌측 혹은 우측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선홈통 및 드레인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 변경은 불가함.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유의 바람. • 욕실 천장에는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세대분전함, 세대통신함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현관장고장 내부, 신발장 내부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개폐를 위해 추가적인 선반배치는 지양해야 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Ⅶ 기타 사항

1.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함.
2.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당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3.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입주시 납부하며, 퇴거시 정산)
4.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중 입주시까지 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로 인하여 안내문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 따른 제반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5.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제공을 할 수도 있음.
6.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무관하게 다소 늦어질 수 있음.
7. 각종 정책 및 관련법령 변경으로 인하여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일과 모집조건이 상이할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1개소), 경비실(2개소), 경로당(1개소), 어린이놀이터(3개소), 유아놀이터(1개소), 주민운동시설(옥외:1개소 배트민턴장), 어린이집(1개소), 근린생활시설(1개동),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센터(1개소), 골프연습장(1개소), 탁구장(1개소), 에듀센터(1개소), 맘스카페(1개소), GX룸(1개소), 입주민회의실(1개소)

■ 입주예정자에 대한 융자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융자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함.(미납시 연체료 가산됨)
- 개인의 사정에 따라 중도금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당사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금 대출 불가사유로 계약의 해지는 주장할수 없음. • 본 아파트는 당첨된 해당 동 · 호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납입 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당첨된 주택의 공급금액, 개인의 신용상태 및 소득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동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음. • 사업주체에 의해 지정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융자를 받을 경우,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사업주체가 지정한 기간 내의 이자)는 사업주체가 통보하는 입주개시일 전날까지(이자 납입일) 대납하기로 하되, 입주개시일 이후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하며, 입주시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를 전액 상환하여야함.
-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보증회사의 주택구입자금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되며, 발급기준에 따라 발급에 제한을 받을 경우 대출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개인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도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함. 또한 당 아파트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도금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추후 타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에 제한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기로 함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에 의거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일 이전(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추후 통보함)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에 통보함.
- 사전점검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등

■ 분양가 상한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안에 주요항목별로 분양가격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단위 : 원)

항 목	공종	금액	비 고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63,088,345,689	
	기간이자	5,319,680,491	
	그 밖의 비용	3,093,852,470	
공사비	토목	8,180,430,000	
	건축	55,233,290,000	
	기계설비	8,066,070,000	
	그 밖의 공종	14,612,570,000	
	그 밖의 공사비	8,523,143,000	
간접공사비	설계비	1,807,788,000	
	감리비	2,472,409,000	
	부대비	62,926,428,722	
그밖의 비용		11,888,629,858	
합 계		245,212,637,230	

■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주택법」제57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위 : 원)

계	공동주택 성능등급에 의한 가산비	법정초과 복리시설	분양보증 수수료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에 따른 추가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가산비용			
					홈 네트워크 공사비	초고속통신 특등급	에어콘 냉매배관 설치 공사비	기계환기설비
11,888,629,858	3,552,618,400	855,028,000	632,356,428	1,850,739,293	2,186,812,216	1,685,453,848	616,711,158	508,910,515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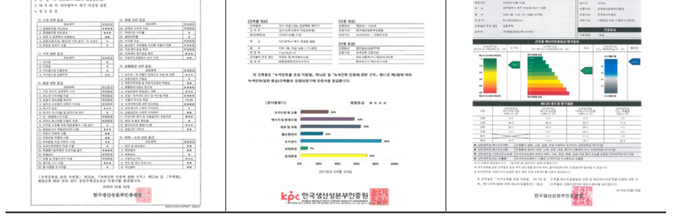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구 분		적용여부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기계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마목)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전기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조명설치(다목)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 대구전파관리소의 초고속정보통신 예비인증

인증 번호	인증 내용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내용 홈네트워크건물
제2018 - 505 - 020 호	특등급	AA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제도 적용 주택
「주택법」에 의거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 · 바닥재 · 주방용구 ·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 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계약할 수 있음.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일괄 선택 (개별 선택 불가)	바닥	마루, 현관바닥 타일, 현관 디딤판 및 굽도리,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욕실/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 타일(타일 붙임 몰탈 포함)	수공간 바닥 방수 및 배수 슬리브, 바닥난방, 시멘트 몰탈 (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초배포함) 및 벽체마감 일체, 아트월, 걸레받이, 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 도장	경량벽체, 콘크리트면처리(해당부위)
	천장	천정지, 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 도장, 천장/우물천장 몰딩 및 마감재	천정틀위 석고보드, 콘크리트면처리(해당부위)
	일반가구	현관 신발장 및 창고장(해당 타입), 드레스룸, 화장대(상판가공석 포함), 붙박이장, 복도장/선반, 수납선반 및 악세서리 일체	
	주방	주방/식당 가구 일체(상판, 씽크볼 및 악세서리 일체, 선반), 벽 타일/인조석, 주방TV, 주방 가전류(가스쿡탑, 렌지후드, 오븐), 수전류, 다용도조명레일	소방관련시설, 주방배기 덕트, 설비배관(급,배수,난방), 정보통신배관, 배선 및 배선기구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욕조, 세면대), 수전류, 액세서리류, 욕실 환풍기, 비데(부부욕실), 벽/바닥 타일, 천장재, 석재(세면대 뒷턱), 재료분리대, 욕실장, 샤워부스, 욕조하부틀, 코킹	도막방수 및 조적위 바탕처리,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배관 배선
	발코니	수전류 (세탁수전, 발코니 수전 등), 전동빨래건조대	
	문	목창호 문틀/문짝/문선/손잡이 및 경첩(하드웨어 일체)	플라스틱창호 내창, 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락, 다용도실 도어, 실외기실 도어/루버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월패드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차감비용 (천원미만 절사함.) (단위 : 천원)

주택형별(주거전용면적)	78	84	101	비 고
금 액	24,419	25,909	32,028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임. - 마이너스 옵션은 계약시 선택 가능하며, 분양계약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입주자는 사업주체가 정한 최초 입주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잔금납부이후 시공이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 이상)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사업주체에서 시공한 소방 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할 예정으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며, 하자발생 책임에 따라 원인규명의무는 계약자본인에게 있으므로 주의 바람.

■ 현장 및 견본주택

- 현 장 :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일원 (대구연경지구 C-3BL)
- 현장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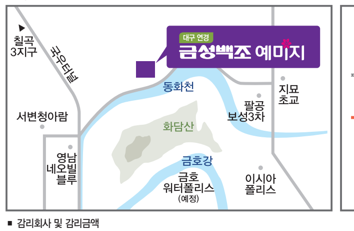

- 견본주택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03-4 (1899-3935)
- 견본주택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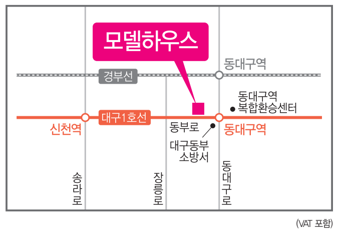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VAT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원양건축사사무소	㈜진광건설엔지니어링	㈜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1,773,780,800원	375,238,200원	223,000,000원	106,000,000원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 사업주체 : 주식회사 대승글로벌(사업자등록번호 : 106 - 87 - 08975)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갈월동, 10층)
  전화번호 (02-794-7920)
- 시공업체 : 주식회사 금성백조건설(사업자등록번호 : 312- 81 - 19148)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4,1동 708,709호(나성동, 르네상스)
  전화번호 (042-623 -8153)
  주식회사 금성백조주택(사업자등록번호 : 306-81-14852)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83번길 9(탄방동)
  전화번호 (042-630-9595)